

제300회 임시회
2011. 5. 20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행 정 문 화 위 원 회

「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2011. 5. 20(목)
행정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1년 5월 2일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5월 4일
- 라. 상정일자 : 2011년 5월 16일

(제30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윤영현)

가. 제안이유

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이 개정(2011. 3. 22)되어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문서에 날인하는 공인의 글자도 “한글전서체”에서 “한글”로 사용되도록 개정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인의 글자 변경
 - “한글전서체” → “한글” (안 제5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조례안은 「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」(2011년 3월 22일)의 개정에 따라 관인의 글자를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김에 따라 공인글자를 “한글전서체”에서 “한글”로 변경하여 도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소수의견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중 “글씨”를 “글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글씨는 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”를 “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”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공인의 글씨 및 규격)</p> <p>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씨는 <u>한글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</u>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</p>	<p>제5조(공인의 글자 및 규격)</p> <p>② 제1항 단서조항 이외의 공인의 글자는 <u>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</u>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</p>

관 계 법 령 발 취

□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

제55조(관인의 내용)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,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,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“인” 또는 “의인”자를 붙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관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「사무관리규정」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관인부터 적용한다.